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 11. 2.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10월 21일

나. 제 출 자: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2022년 10월 26일

라. 상정일자: 제24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2. 10. 3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기획재정국장 정언택)

가. 제안이유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2022.4.20.시행)됨에 따라 조례 위임 사항 등을 정비하여 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 삭제에 관한 사항(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7조)

❍ 상품권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4조의2)

❍ 가맹점의 등록 및 등록 취소 공개에 관한 사항(안 제8조, 안 제8조의2)

❍ 띄어쓰기 정비(안 제10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개정 조례안은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지역사랑상품권법”) 일부개정(2022.4.20.시행)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상품권 운영체계 변경 관련 규정을 삭제하여 영등포사랑상품권 발행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 안 제6조, 안 제7조는 ‘운영대행사’ 의 정의를 비롯한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임. 이는 기존에 운영대행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판매대행점이 수행하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제정되면서 운영대행사 관련 규정을 유지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임.

  이에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기존에 운영대행사가 수행하던 업무를 판매대행점이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상품권 관련 업무 수탁의 주체를 법률과 동일하게 정비함.

- 안 제4조의2는 상품권의 자금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규모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상품권 이용자의 예탁금과 운영자금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이에 「지역사랑상품권법」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

관리) 규정이 신설되어 상품권 운영자금을 자치구 구금고에 설치·운영하도록 함.

다만, 각 자치구가 자금 이전을 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여 한시적으로 서울시가 25개 자치구의 선불충전금을 포함한 상품권 운영 자금을 시금고(신한은행)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계획이므로,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신탁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것임.

- 안 제8조는 가맹점의 등록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 희망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등록 신청 없이도 등록 신청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 이 개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한 것임.

  또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가맹점의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판단한 뒤,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고지하도록 하여 등록 진행 상황에 대해 신청자가 알 수 있도록 함.

- 안 제8조의2는 가맹점의 등록 취소 공개에 관한 사항으로 위법적인 가맹점 등록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가맹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 취소된 가맹점의 재등록 신청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도록 「지역사랑상품권법」 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는 것임.

❍ 검토 결과

- 본 개정안은 「지역사랑상품권법」 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운영자금 관리 등 상품권 제도를 개선하고 미비점을 보완하는 개정으로 법적 문제점은 없으며 조례의 현행화를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라 판단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제 32 호

제출연월일: 2022.10. .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안정적인 자금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품권 자금 관리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임을 규정(안 제4조의2)

나. 가맹점의 등록 제한단위 세분화(안 제8조제2항)

다. 가맹점의 신청방법, 자격 요건, 등록여부 등 조례 위임사항 정비 (안 제8조제1항, 제3항, 제4항)

다. '운영대행사' 용어의 정의 일부조항 삭제(안 제2조, 제6조, 제7조)

라. 기타 약칭 및 띄어쓰기 정비(안 제8조의2,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개혁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2. 9. 15.~10.5. / 20일 간)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공동 운영대행사"를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등)"을 "(판매대행점의 선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각각 "판매대행점"으로 한다.

제8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제2항제2호 중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업종으"를 "업종이나 제한 사업체"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

④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2 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를 "법 제8조"로, "한다"를 "하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를 "영 제3조"로, "60이상"을 "60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운영대행사”란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체를 말한다.	<삭 제>
4.·5. (생 략)	3.·4.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신 설>	제4조의2(상품권의 자금관리) 구청장은 사용자가 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상품권을 발행·판매·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구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신탁계약 체결 주체는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 한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상품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이를 추진하는 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상품권 유통에 따른 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동 운영대행사의 선정·관리 사업	4. ---------- 판매대행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7조(운영대행사·판매대행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상품권의 발행·유통·시스템 관리 및 운영, 유지보수 또는 상품권의 판매·충전·환전(이하 “발행 등”이라 한다) 등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제7조(판매대행점의 선정 등) ① ---------- 판매대행점----------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과의 협약 내용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② ------ 판매대행점------- ---------- ---------- ---------- ----------.
③ 운영대행사와 판매대행점은 발행 등의 업무실적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판매대행점---------- ---------- ----------.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가맹점으로 등록을 희망하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8조(가맹점의 등록) ① ----- ---------- ---------- ---------- ---------- --. 다만, 판매대행점을 통하여 가맹점을 하고자 하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②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2.「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업종으로서 구	4. ---------- ---------- 업종이나 제한

청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체--
<신 설>	③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에 영업소를 두고 영업 중인 업소 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 등록을 한 업소
<신 설>	④ 구청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제1항에 따른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2(가맹점의 등록 취소 공개) 구청장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해당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2(가맹점의 등록 취소 공개) ------ 법 제8조--- 하며, 해당 가맹점의 등록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

	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할인금액을 제외하고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0조(상품권 잔액의 환급) 영 제3조---------- ---------- ---------- 60 이상--- ---------- ---------- ---------- ---------- -------. ---------- ---------- ----------.